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47
----------	------

발의연월일 : 2017. 3. 29.

발의자 : 김관영 · 민병두 · 제윤경

박용진 · 김동철 · 조배숙

이태규 · 이종걸 · 송희경

이동섭 · 주승용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의결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 의결서와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신용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회의의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은 금융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사록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내용
5. 표결수
6.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금융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u>의사록을</u>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u> ----- ----- -----. <u>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 시</u> <u>2. 안건</u> <u>3. 출석한 위원의 성명</u> <u>4. 주요 발언내용</u> <u>5. 표결수</u> <u>6.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lt;신 설&gt;</u>	